

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(재)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10. .
제출자 : 하 남 시 장

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(재)위탁 동의안



하 남 시
[보 건 위 생 과]

□ 제안이유

-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만료일이 2016.12.31.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공정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(재위탁)을 추진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,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인 영양·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
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
-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- 2016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(식약처) p.27 라. 위탁계약 및 재위탁
※ 시·군·구청장은 위탁기관 계약완료 3개월 이전에 기존 위탁기관의 업무 추진실적,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을 할 수 있다.

□ 주요내용

- 현 황
 - 사 업 명 :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 - 운영장소 : 하남시 대청로 10, 하남시의회동 지하1층
 - 수탁법인 :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
 - 운영인력 : 11명(센터장 1, 영양사/위생사 10)
 - 위탁기간 : 2011.3.~2013.12.31.(1차: 3년)/2014.1.~2016.12.31.(2차: 3년)
 - 2016년도 사업예산 : 500,000천원

- 지원대상 : 148개소(어린이집 136, 유치원2, 지역아동센터 10)/4,706명
- 사업내용
 - 하남시 전지역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 식품·영양·위생·교육 등 지원
 - 식단개발 및 보급,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
-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적정성 여부 합동점검(연 1회 실시)
 - 점검일시 : 2016. 4. 29.
 - 점검자 : 강안지방수탁식품안전관리관리유주주관 하남시보건위생과강제나주주관
 - 점검내용
 - (시설관리)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센터 시설 적정성 여부
 - (운영관리) 등록 급식소 지원 서비스 성실 수행 여부
 - (예산관리) '15년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
 - (직원관리) 직원 채용절차, 자격 및 복무 적정성 여부 등
 - 점검결과 :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적정 운영되고 있음 (※강도 식품안전과9823(2016.5.31)호 관련)

○ 추진내용

- 재위탁기간 : 3년 (2017. 1. 1. ~ 2019. 12. 31.)
- 위탁예산 : 500,000천원(2016년도 예산기준)
 - ※ 2017 ~ 2019년도 예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- 위탁방법
 - 가.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위탁기관의 재위탁 여부를 검토 후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시 재위탁 추진 나. 심사점수 미만 또는 부적격시 공모선정

□ 추진상황

- 2016.08.24. :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 검토 보고
- 2016.08.25. : 하남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심사서류 제출요청

- 2016.09.05. : 기존 법인 재위탁 의사 확인(재위탁 신청서 접수)
- 2016.09.08. :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뢰
- 2016.09.26. :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

□ 향후 추진계획

- 하남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의거 시의회 동의
-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'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' 구성 및 심사
- 재위탁 여부 결정 또는 부적격시 공모선정을 통해 재심사
- 위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

□ 주관부서 검토의견

-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
-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향상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기존 운영 중인 법인에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

- 붙임 1.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각 1부.
 2.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검토보고 1부.

붙임 1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

【관련법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[시행 2001.4.16.] [경기도하남시조례 제609호, 2001.4.16., 제정]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

[시행 2016.8.4.] [법률 제14024호, 2016.2.3., 일부개정]

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"급식소"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 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
 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 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"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"라 한다)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"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,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16.8.4.] [대통령령 제27399호, 2016.7.26., 일부개정]

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 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 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【참고자료】

2016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(식약처)

Part 2.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| 27

라. 위탁 계약 및 재위탁

○ 위탁기관 계약 체결

-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(법인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과 센터 운영과 관련한 **협약**을 체결하여야 하며, **협약내용은 공증**하여야 한다.
- 위탁기관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**15일 이내**에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을 체결한 후 **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.**
- 위탁기간은 **3년 이내**로 하되,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.

○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

-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은 위탁기관 계약 완료 3개월 이전에 위탁기관을 **공고하여 선정하거나, 기존 위탁기관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.**
- ※ 기존 위탁기관을 **재위탁** 할 경우 평가자료 및 신청서류 등은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이 필요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.
- **기존 위탁기관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 할 경우 계약완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,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을 할 수 있다.**
-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할 때는 '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**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**해야 한다.
-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시 **사업승계를 원칙**으로 한다.

붙임 2

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검토 보고

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만료일이 오는 2016.12.31.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2017년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
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
-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2016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(식약처) p.27 라. 위탁계약 및 재위탁
 - ※ 시·군·구청장은 위탁기관 계약완료 3개월 이전에 기존 위탁기관의 업무 추진실적,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을 할 수 있다.

II 심사대상

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


- 운영장소 : 하남시 대청로 10, 하남시의회동 지하
- 수탁법인 :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
- 운영인력 : 11명 (센터장 1, 영양사/위생사 10)
- 센터장 : 조우균 교수
- 위탁기간 : 2011.3.~ 2013.12.31.(1차) 2014.1.~2016.12.31.(2차)
- 2016년도 사업예산 : 500,000천원
- 사업내용
 - 하남시 전지역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 식품·영양·위생·교육 등 지원
 - 식단개발 및 보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

III 그간의 추진실적

□ 사업예산

(단위: 천원)

구분	계	국비	도비	시비
2014년	360,000	180,000	-	180,000
2015년	450,000	225,000	16,900	208,100
2016년	500,000	250,000	40,000	210,000

※ 2016년도 이전의 경우: 기존센터 예산은 사업비의 10% 삭감하여 지급(가이드라인에 의거)

□ 센터등록 현황

구분	2014년	2015년	2016년*
시설수	126	141	148
원아수	3,583	4,486	4,706

□ 주요 운영실적

구분	2014년	2015년	2016년*	
위생·안전 순회방문지도	433회/126개소	494회/141개소	281회/148개소	
영양 순회방문	241회/126개소	318회/141개소	160회/148개소	
급식지원	식단제공	76건/4,500회	96건/4,015회	56건/2,826회
	표준레시피 제공	78건/893회	81건/621회	36건/402회
	가정통신문 개발 및 제공	12건/746회	12건/753회	16건/548회
대상자별 교육지원	영유아	45회/968명	82회/1,429명	132회/3,532명
	조리원	501회/446명	689회/540명	281회/358명
	원장 및 교사	241회/399명	284회/428명	160회/163명
	학부모	45회/968명	82회/1,429명	47회/1,143명
대상자별 집합교육	학부모	-	1회/	1회
	조리원	2회/55명	2회/77명	1회/60명
	원장 및 교사	1회/82명	2회/187명	4회/224명
특화사업	영유아(교사포함) 영양 건강 체험 프로그램	8회/1,100명	9회/1,543명	11회/1,787명
	어린이 영양, 건강 체험 프로그램	-	1회/62명	1회/80명
	대체조리원 사업	-	10건/29일	11건/20일

※ 2016년은 7.31일 기준

IV 재위탁 검토 의견

- 접근성을 고려하여 검토결과 현재 관내 설치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(대학) 또는 법인이 없으며, 현재 위탁기관이 성남시 소재에 위치하여 지리적 접근성 용이함.
- 현재 위탁기관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국 최초로 본 사업을 시작하여 타 기관 센터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우리시 외에 서울 강동구, 송파구 등의 운영사업을 겸하여 정보공유 가능함.
- 또한, 위탁기관인 가천대학교는 식품영양학과, 유아교육학과, 사회복지학과 등의 인적자원과 교육실, 조리실습실 등의 무상 사용으로 시설자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본 사업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.
- 그동안 우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(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)은 영양·위생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한 취약한 관내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위생안전, 영양관리, 식단프로그램, 집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(※추진실적 참조), 2016년 6월말 기준 정부합동평가 중간결과 경기도 31개 시·군 중 3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.
- 따라서 위탁기간 만료일이 2016.12.31.일로 도래함에 따라 현 위탁기관에 대하여 그간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‘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’의 심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2017년~2019년(위탁기간 3년 이내)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V

향후계획

□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

- 일 시 : '16. 8월 ~ 9월 중
- 제출서류 : 시정조정위원회 심의(안), 민간위탁 운영 동의(안), 재위탁 검토 방침 등
- 근 거 :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

□ 기존위탁기관 재위탁 신청서 접수

- 일 시 : '16. 9월 중
- 제출서류 : 수탁신청서, 위탁운영 기간 동안의 센터 운영 및 사업 (예산)계획서, 2014 ~ 2016년 사업수행 실적 등
- 근 거 : 2016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(식약처) p.27
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서

□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'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' 구성

- 위원회 구성 : '16. 10월 중
- 구성인원 : 7명(위원장 1명, 위원 6명)
- 활동내용 : 기존센터의 재위탁 결정 심의
-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재위탁 결정시까지 명단 비공개

□ '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' 심사

- 일 시 : '16. 10월 ~ 11월 중
- 목 적 : 재위탁 여부 심의
- 심사내용 : '14 ~ '16년 사업수행평가, '17 ~ '19년 사업계획 등
민간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, 공신력 및 재정능력,
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

□ 재위탁 여부 결정

-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
- 심사점수 미만 또는 부적격시 공모 선정

□ 적격 심사 시 위탁 협약 체결

- 약정체결 : 재위탁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
- 협약내용
 - 시 설 명 : 하남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 - 위탁기간 : '17.1.1. ~ '19.12.31. (3년)
 - 예 산 액 : '17 ~ '19 (3년) 예산범위 내
 - 사업내용 :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 및 하남시 전 지역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 및 위생관리 지원 등
- 협약서 공증